

# 서울대학교 직원채용(행정-회계사) 공고

서울대학교 직원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. 7. 31.  
서울대학교총장

## 1. 선발예정인원 및 지원자격

채용분야 (직급)	예정 인원	지원자격	선발방법
행정7급 (회계사)	0명	- 기본자격 ·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· 아래의 공인영어성적을 보유한 자 (TEPS 551점, TOEIC 695점, TOEFL 79점, TEPS-S 50점, TOEIC-S 120점, OPIc IM2 이상 중 택1)  ※ 업무특성 : 대학행정 업무	- 서류전형 - 1차 면접시험 - 2차 면접시험

- 응시연령 : 만 20세 이상(1995. 12. 31. 이전 출생자)
- 학력 : 제한없음
- 공인영어성적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

## 2. 응시원서접수

- 접수기간 : **2015. 8. 5.(수) ~ 2015. 8. 14.(금)**

- 접수방법 :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, 인터넷으로만 접수



- URL : 서울대학교 직원채용 지원서 등록사이트(<https://recruit.snu.ac.kr/>)
- **우편, E-mail 접수 불가**
-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요망  
(※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입력 중이라도 입력 중단 - 지원불가)
-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
-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증빙서류를 구비·확인하여 오류입력으로 인한 합격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람

### 3. 선발방법

○ 절차

- 서류전형 → 1차 면접 → 2차 면접

○ 평가내용

- 서류전형 : 발전가능성 및 소양, 직무 관련 자격증, 어학능력, 경력,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실적 등 종합평가

- 면접시험 : 1차 면접(역량), 2차 면접(인성 및 적성)

※ 행정7급(회계사)은 필기시험 및 영어인터뷰 제외

○ 가산특전

-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해 취업 우대

(※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함)

구 분	가산비율	비 고
취업지원대상자	만점의 10% 또는 5%	
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한 장애인은 취업 우대

- 전산자격증(서류전형평가에만 반영)

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		비 고
10%	5%	
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1급	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 워드프로세서 1급, 컴퓨터활용능력 2급	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.

※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

### 4. 시험일정

○ 시험공고 : 2015. 7. 31.(금) ~ 8. 14.(금)

○ 원서접수 : 2015. 8. 5.(수) ~ 8. 14.(금)(온라인 접수)

○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: 2015. 8. 19.(수)

○ 1차 면접시험 : 2015. 8. 21.(금)

○ 1차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: 2015. 8. 26.(수)

○ 2차 면접시험 : 2015. 8. 28.(금)

○ 최종합격자 발표 : 2015. 9. 2.(수)

※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별도 공지(서울대학교 홈페이지)

※ 서류전형합격자 및 면접시험 합격자 등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

## 5. 임용사항 등

○ 채용 후 시보기간을 둠(시보기간 6개월)

○ 임용 제외

- 합격자 중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, 제45조(정년)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○ 「직원인사규정」 제13조(결격사유)
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※ 개정된 민법 시행(2013.7.1.)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.6.30.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.
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○ 「직원인사규정」 제45조(정년)

-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.

- 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
○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준용

-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-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
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

-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

○ 최종합격자는 9월 중에 임용될 예정이며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

○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가 가능하여야 함

## 6. 기타사항

○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최종 합격자의 부적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평가점수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○ 응시자의 오류입력·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

○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

○ 본 채용계획은 학교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

○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 인사교육과(02-880-5096 ~ 8)로 문의 바람